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82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박수영・김기현・박성훈

강승규 • 곽규택 • 이헌승

나경원 • 백종헌 • 이인선

김종양 • 박수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법관의 기피신청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소위 '판사 쇼핑' 사례가 발생하고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행 구속기간 제도를 잠탈하고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즉시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3, 제92조제3항 및 제4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의 이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편제1장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 또는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1항 중 "決定으로"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으로"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第22條"를 "제16조의3,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따라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 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소가 제기되는 때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 ② (생	신청의 방식)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의 이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6조의3(소송절차의 정지) 법원
	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
	여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 또는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상급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
	<u>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u>
	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第21條(忌避申請에 對한 裁判) ①	第21條(忌避申請에 對한 裁判) ①
忌避申請에 對한 裁判은 忌避	
當한 法官의 所屬法院合議部에	
서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u>이내에 결정으로</u>

- ② · ③ (생 략)
-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 第
 - ② (생 략)
 - ③ <u>第22條</u>, 第298條第4項, 第30 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節次가 停止된 기 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 인・구금 기간은 第1項 및 第2 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 다.

<신 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6조의3, 제22조	
④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따	
라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이 소	
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	
부터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	
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